

「중요한 표시 · 광고사항 고시」 제정

-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999-25호 -

공정거래위원회는 10월 23일(토),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표시·광고 사항을 규정하여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데 필요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기 위하여 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근거하여 사업자(사업자단체 포함)가 표시·광고 내용에 포함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였다.

I. 목적

이 고시는 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의 상품 또는 용역(이하 “상품 등”이라 한다)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표시·광고사항(이하 “중요정보”라 한다)을 정합으로써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하는데 필요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여 정보 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.

II. 표시·광고에 관한 기본원칙

- (1) 사업자 (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를 포함한다)는 소비자가 상품 등의 구매선택 결정을 할 때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정보 항목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진실되게 알릴 기본적 의무가 있고, 소비자는 자신이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 등에 대해 정확하게 알 권리가 있다. 소비자가 상품 등에 관한 중요정보를 알고서 최종적인 구매선택 결정을 할 때 비로소 소비자 권익이 보호됨과 더불어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질서를 정착시킬 수 있다.

(2) 따라서 사업자는 자신이 제조·판매하는 상품 등에 관하여 표시·광고 행위를 할 경우 중요정보를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·광고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.

(3) 이 고시는 사업자가 자신의 상품 등에 관하여 신문, 잡지, 전단지 등 인쇄매체와 TV, 케이블TV 등 방송 매체(다만, 라디오는 제외한다) 광고를 할 경우에

한하여 적용한다 (다만, 장의업종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자신의 상품 등에 표시할 경우에도 적용한다). 방송매체의 경우 음성 또는 자막으로 광고할 수 있으며, 중요정보를 인쇄매체 광고에 포함하였을 때에는 인쇄매체 광고를 참고토록 하는 등 해당 인쇄매체 광고 사실을 인용할 수 있다.

- (4) 사업자가 광고 내용에 자신의 성명, 주소, 전화번호, 허가번호(해당 업종이 등록 대상인 경우 등록번호), 상품 등의 명칭 기타 사업자 또는 상품 등에 관한 기본정보(이하 “기본정보”라 한다)만을 포함할 경우에는 이 고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(다만, 표시 내용에는 기본정보만을 포함하더라도 이 고시의 적용대상이 된다).

(5)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“표시”·“광고”의 용어에 대해서는 법 제2조(정의)제1호 내지 제2호 규정을 준용한다.

III. 업종별 중요정보

1. 부동산 중개업종의 중요정보

1. 적용범위

부동산중개업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의 중개 등 부동산중개업의 등록을 한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.

2. 중요정보 항목

- (1) 중개수수료 과다 징수에 따른 피해보상기준
 - (2)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, 거래 및 이용제한 사항의

확인·설명을 소홀히 하여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의 피해보상기준

<광고 예시>

- “증개수수료 과다 징수, 증개대상물의 권리관계와 거래·이용 제한 사항의 확인·설명 소홀에 따른 소비자 피해 보상기준”을 구체적으로 명시
- 피해보상기준 : “구체적인 피해보상기준”을 명시하거나 “○○ ○○ 보상규정이 적용됨” 등과 같이 광고

2. 학습교재 판매업종의 중요정보

1. 적용범위

- (1) 아동용 학습교재, 외국어 학습교재를 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.
- (2) “아동용 학습교재”라 함은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 또는 초등학생 대상의 학습교재를 말한다.
- (3) “외국어 학습교재”라 함은 영어, 일어 등 외국어 학습을 위한 학습교재를 말한다.
- (4) “학습교재”라 함은 인쇄물과 테이프(비디오테이프를 포함한다), 컴퓨터디스크(CD롬을 포함한다) 등을 포함한다.

2. 중요정보 항목

- (1) 구입 후의 철회 가능 여부와 철회의 방법
- (2) 파손 등 피해 발생시 보상기준

<광고 예시>

- “구입 후의 철회 가능 여부·철회의 방법과 파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보상기준”을 구체적으로 명시
- 철회가능 여부·철회의 방법 : “구입 후에는 철회인권” 또는 “계약서 수령일부터 ○○이내 서면으로 철회 가능함” 등과 같이 광고
- 피해보상기준 : “구체적인 피해보상기준”을 명시하거나 “○○ ○○ 보상규정이 적용됨” 등과 같이 광고

3. 학원운영 업종의 중요정보

1. 적용범위

- (1) 학원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학원 운영업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 및 별표1에 의한 교습과정 중 ‘어학’, ‘번역’, ‘성인고시’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.
- (2) “학원”이라 함은 사인이 10인 이상의 학습자에게

30일 이상의 교습과정(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 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라 지식·기술(기능을 포함한다)·예능을 교습하거나,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한다.

- 가. 교육법 기타 법령에 의한 학교
- 나. 도서관 및 박물관
- 다.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
- 라. 사회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교육시설
- 마. 사회교육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에 부설한 시설
- 바.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기타 사회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

2. 중요정보 항목

- (1) 수강료·이용료 또는 교습료의 환불 가능 여부 및 환불기준
- (2) 수강료·이용료 또는 교습료 외에 부대비용의 추가 부담 여부

<광고 예시>

- “수강료 등의 환불 가능 여부·환불기준과 수강료 등 이외에 부대비용이 추가부담되는 지 여부”를 구체적으로 명시
- 환불가능여부 및 환불기준 : “이용료 등은 환불 안됨” 또는 “수강료 등의 구체적인 환불기준”을 명시하거나 “수강료 환불에 대해서는 ○○○보상규정에 따른 환불기준이 적용됨” 등과 같이 광고
- 부대비용의 추가부담 여부 : “구체적인 추가부담 내역”을 명시하거나 “수강료 외에 추가부담 없음” 등과 같이 광고

4. 증권투자 업종의 중요정보

1. 적용범위

- (1)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조(정의)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유가증권 투자에 운용할 목적으로 자금 등을 수입하는 경우(수익증권을 발행·판매하는 경우를 말한다)에 적용한다.
- (2) 증권투자회사법 제2조(정의)제1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가 자산을 유가증권 등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주식을 발행·판매하는 경우(뮤추얼펀드 가입청약을 받는 경우를 말한다)에 적용한다.

2. 중요정보 항목

- (1) 운용 중인 다른 투자상품이 있는 경우 표시 · 광고 일 직전 가장 최근에 발행한 2개의 상품(다만, 운용 중인 투자상품이 1개 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에 한한다)에 대하여 당해 상품별 총 운용기간의 실현 수익률과 같은 기간의 종합주가지수 변동률
- (2) 환매 신청 후 환매금액의 수령이 가능한 구체적 시기
- (3) 성과 수수료(운용 수수료 등 명칭여하를 불문한다) 등 유가증권 운용과 관련한 각종 수수료

<광고 예시>

- “기준상품 2개의 설정일부터 신상품 광고일 까지의 기준상품 실현 수익률과 같은 기간의 종합주가지수 변동률·상승률 또는 하락률”, “환매 신청할 경우 환매 금액의 실제 수령 시기”, “성과수수료 내역”을 구체적으로 명시
- 실현수익률 및 종합주가지수 변동률 : “○○상품 수익률 ○○% (종합주가지수 ○○% 상승 또는 하락), 투자기간 : 99.○○~99.○○” 등과 같이 광고
- 환매금액의 실제 수령시기 : “환매금액은 신청 즉시 수령가능함” 또는 “환매금액은 신청 후 ○○개월간의 청산절차를 거쳐 수령할 수 있음” 등과 같이 광고
- 성과수수료 내역 : “성과수수료는 유가증권 평가액의 연○○%” 등과 같이 광고

5. 장의업종의 중요정보

1. 적용범위

장의용품 중 수의를 제조 · 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.

2. 중요정보 항목

- (1) 수의 원단 제조에 소요되는 원사의 종류, 구성비율 및 제조지역
- (2) 수의 원단의 제조방법 및 제조지역
- (3) 수의 완제품의 제조자명

<표시 · 광고 예시>

- “원사의 종류·구성비율·제조지역, 원단의 제조방법·제조지역, 완제품의 제조자명”을 구체적으로 명시
- 원사의 종류·구성비율·제조지역 : “대마100%” 또는 “대마 70% 저미30%, 국내 제조인 경우 “시·군단위 이하의 지역명” 외국 제조인 경우 “국가명”을 명시
- 원단의 제조방법 및 제조지역 : “수직업식 또는 기계식 여부” 와 국내제조인 경우 “시·군 단위이하의 지역명”, 외국제조인 경우 “국가명”을 명시
- 완제품의 제조자명 : “제조자명”을 명시

6. 체육시설 운영업종의 중요정보

1. 적용범위

- (1) 체육시설의 설치 ·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 중 다음 각호의 업종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.

- 가. 종합체육시설업
- 나. 수영장업
- 다. 체력단련장업

- (2) 위 (1) 각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가. “종합체육시설업”이라 함은 체육시설의 설치 ·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체육시설업(수영장업, 체육도장업, 블링장업, 테니스장업, 골프연습장업, 체력단련장업, 에어로빅장업, 당구장업, 썰매장업, 무도학원업, 무도장업 등 11개업종)의 시설 중 실내수영장을 포함한 2종 이상의 체육시설을 동일인이 한 장소에 설치하여 하나의 단위 체육시설로 경영하는 업을 말한다.

- 나. “수영장업”이라 함은 수영장의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(시·군 소재 수영장의 경우 100제곱미터) 이상이고 물의 깊이가 0.9 미터 이상 2.7 미터 이하인 수영장을 운영하는 업을 말한다.

- 다. “체력단련장업”이라 함은 헬스클럽 등 운동전용 면적 66제곱미터 이상, 기초 체력단련기구 5종 이상, 연습용구 10점 이상, 신장기 · 체중기 등 필요한 기구를 갖춘 체력단련장을 운영하는 업을 말한다.

2. 중요정보 항목

- (1) 체육시설 이용계약의 종도해지시 잔여 기간의 이용료 환불기준

<광고 예시>

- “종도해지에 따른 잔여기간의 이용료 환불기준”을 구체적으로 명시
- 환불기준 : “구체적인 환불기준”을 명시하거나 “○○○ 보상규정에 따른 환불기준이 적용됨” 등과 같이 광고

7. 할인카드 회원권 운영업종의 중요정보

1. 적용범위

- (1) 소비자로부터 연회비 등 회원 가입금액을 받고 소비자가 다음 각호의 상품 등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을 경우 정상가격보다 할인을 해주는 할인 전문업자에 대해 적용한다.
- 가. 호텔, 콘도미니엄 숙식
 - 나. 가구, 가전제품
 - 다. 연극, 영화관람
 - 라. 주유소 기름
- (2) 다만,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(정의)제2호에 의한 신용카드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자신의 신용카드 회원에게 상품 등의 구입시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
2. 중요정보 항목

- (1) 할인카드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피해의 보상기준
(2) 가맹점의 수 및 상품별 할인율

<광고 예시>

- “할인카드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보상기준과 가맹점의 수 및 상품별 할인율”을 구체적으로 명시
- 피해보상기준 : “구체적인 피해보상기준”을 명시하거나 “○○ ○보상규정이 적용됨” 등과 같이 광고
- 가맹점의 수 및 상품별 할인율 : “가맹점 총 ○○개, ○○상품 ○○% 할인” 등과 같이 광고

8. 사진현상 및 촬영 업종의 중요정보

1. 적용범위

사진을 현상하거나 촬영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.

2. 중요정보 항목

- (1) 현상불량 등 피해발생에 대한 보상기준
(2) 사진 원판의 인도 가능 여부

<광고 예시>

- “현상불량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보상기준과 사진원판의 인도 가능여부”를 구체적으로 명시
- 피해보상기준 : “구체적인 피해보상기준”을 명시하거나 “○○ ○보상규정이 적용됨” 등과 같이 광고
- 사진원판의 인도 가능 여부 : “사진원판은 모두 인도 안됨” 또는 “○○ 사진원판의 경우 인도 가능함” 등과 같이 광고

9. 화물자동차운수 업종의 중요정보

1. 적용범위

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(정의)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 중 ‘이사화물’ 또는 ‘택배화물’을 취급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.

2. 중요정보 항목

- (1) 분실 · 파손 등 피해발생시 보상기준

<광고 예시>

- “분실 · 파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보상기준”을 구체적으로 명시
- 피해보상기준 : “구체적인 피해보상기준”을 명시하거나 “○○ ○보상규정이 적용됨” 등과 같이 광고

10. 완구 제조업종의 중요정보

1. 적용범위

- (1) 품질경영촉진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별표4에 의한 사전 안전검사 대상 공산품 중 ‘작동완구’를 제조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.
(2) ‘작동완구’의 구체적 범위는 「작동완구 품질검사기준」(공업진흥청고시 제92-268호)의 적용대상 품목으로 한다.

2. 중요정보 항목

- (1) 결함 · 하자 등 피해발생시 보상기준

<광고 예시>

- “결함 ·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보상기준”을 구체적으로 명시
- 피해보상기준 : “구체적인 피해보상기준”을 명시하거나 “○○ ○보상규정이 적용됨” 등과 같이 광고

IV. 과태료 부과

법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표시 · 광고 내용에 중요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할 때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 법인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인이 위의 사항을 위반할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.

부 칙

- 이 고시는 2000.4.1부터 시행한다.